결재 날자

법제실장

제一국장

총무과장

기안자

주무자

시행 날자 4293. 4. 26 송

법제 제 호

년 월 일접수 관련번호

일기안 정서 대조 기장 검인 발송

편친 류별

류 종별

보존 종별

종

주무원

公布에 關한 件 稟議

수신인

제一안 공보실장

제二안 관방장 관

제三안 ~~수석국무위원~~

발신인

법제실장

공포건명 비상계엄선포의건

단기四二九三년 四월 二十六일 대통령께서 재가하신 ~~공포~~ 국무원 제八九호를 다음과 같이 공포절차를 밟고저 재결을 바라나이다

(제一안)

0476 221

수제의건 // 부 송부하오니 다음과같이 공포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

기

一、공포건명 비상계엄선포의건

二、공포종별번호 공포원 제 八九 호

三、공포날자 단기 四二九一년 四 월 二十八 일

(제 二 안)

수제의건 다음과같이 공포되였음으로 통지하나이다

기

(제一안 「기」와같음)

(제 三 안)

수제의건 다음과같이 공포되였아오니 민의원의장에게 통지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

기

(제一안 「기」와같음)

完結種 / 未完結

決裁 年 月 日

施行 年 月 日

國事 第 號

檀紀四二 年 月 日接受

檀紀四二九三年四月二十六日起案

編纂 類別

保存 種別

淨書 / 對照 / 帳記 / 鈐印 / 發送

關係番號 國事參第 六一九 號

種 類

擔當事務官

課長

事務局長 ㊞ 理事官

法制室長
兼任國務委員

大統領

件名 非常戒嚴宣布의 件 公告의 件

檀紀四二九三年四月二十六日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本件을 다음과 같이 公告함이 可하오리까

國務院事務局

0478 223

（公告案）

國務院公告第八十九號

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다음과 같이 戒嚴을 宣布한다

大統領 璽

檀紀四千二百九十三年四月二十六日

國務委員 外務部長官
國務委員 內務部長官

國務院事務局

0479 224

國務委員 財務部長官 송인상
國務委員 法務部長官 권승렬
國務委員 國防部長官 김정렬
國務委員 文教部長官 [illegible]
國務委員 復興部長官
國務委員 農林部長官 리근직
國務委員 商工部長官
國務委員 保健社会部長官
國務委員 交通部長官 [illegible]
國務委員 遞信部長官

一、理由 攪乱된 秩序를 回復하고 公共의 安寧을 維持
하기 為함

二. 種類　非常戒嚴

三. 施行日時　檀紀四千二百九十三年四月二十七日　零時

四. 地域　慶尚南道　馬山市

五. 戒嚴司令官　陸軍中將　宋堯讚

4293 4. 27
발 송

國事總第八九號

（第二案）

檀紀四二九二年四月二十六日

大統領

民議院議長　貴下

非常戒嚴宣布通告의件

檀紀四二九三年四月二十六日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
다음과같이 戒嚴을 宣布하였아옵기 이에 通告하나
이다

記

一、理 由 攪亂된 秩序를 回復하고 公共의 安寧을
維持하기 爲함

二、種 類 非常戒嚴

三、施行日時 檀紀四千二百九十三年四月二十七日 零時

四、地 域 慶尙南道 馬山市

五、戒嚴司令官 陸軍中將 宋堯讚

0482 227

계 엄 사 령 부

계사치 제 56 호

수신 국방부 장관 4293. 4. 26

제목 비상 계엄 선포 상신

계엄법 제 1 조 제 4 조 및 제 13 조 에 의하여 하기 지역에 대하여 비상 계엄 선포를 상신하오니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" 기 "

1. 종류 비상 계엄
2. 지역 경상 남도 마산시
3. 시행일시 4293. 4. 27 .00.00
4. 계엄사령관 육군 중장 송 요 찬

계엄사령관 육군 중장 송 요 찬

0483 228